

4條 市·道の 敎育監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敎育規則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條例를 廢止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は 서울特別市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 關한條例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廢止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5條, 獎學金規程 第3條, 獎學金規程施行規則 第4條에 根據하는 것입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 서울特別市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 關한條例廢止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3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폐지사유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자격의 요건과 선정·지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학생의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시행규칙 제4조에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를 폐지함.

4. 근 거

- 가. 지방자치법 제15조
- 나. 장학금규정 제3조
- 다. 장학금규정시행규칙 제4조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1982. 2. 16. 제정되었고, 제정 당시에는 교육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중·고등학교 취학대

상자 중 특별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지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 헌법 제31조 및 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장학금규정 대통령령 제3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립의 중·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대상자 선정,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장학금 규정시행규칙 제4조에는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 선정요령, 선정인원, 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근거규정을 정확히 밝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단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의 폐지와 규칙의 제정시기의 공백으로 장학금지급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행정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答辯時間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와 答辯을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 敎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 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